

知(的)所(有)權(紛)爭(事)例

歌唱의 人格的 保護 限界

—美著作權法엔 人格權規定없다—

<1977年 6月 8日, 美일리노이州高法判決>

1. 原告: 오하이오 프레이 어즈 및 포노그램會社

2. 被告: 웨스트타운드會社

3. 事件概要

原告들의 主張인즉 過去에 원고들이 所屬되어 있던 音樂 錄音出版社인 被告와 그 系列 會社는 원고들이 被告會社 在籍 中에 創作, 演奏한 未編輯, 未 完成 演奏曲을 스타디오에서 테 이프로 만들고 미완성의 이 곡 을 위하여 新曲과 歌詞를 붙여 다른 音樂家로 하여금 소리를 넣어 마무리한 레코드를 Rattlesnake라고 命名, 原告그룹의 오하이오 프레이어즈의 레코드 로하여 發賣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行爲는 일리 노이州的 詐欺去來團束法등에 違反된다고 提訴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이미 1次發表한 歌曲을 新曲으로서 廣告하거나 어느 音樂家에게 不完全한 것을 完成 또는 원고의 作品이라 하여 파는 行爲는 違法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1審判事는 被告의 레코드製造頒布의 豫備的 禁止 命令申請을 許可하게 되었다. 그 法的根據는 일리노이州 消費

者詐欺虛偽去來業務團束法, 統一詐欺去來業務團束法 및 코몬 로 不正競爭防止法에 의거한 것이며 그 신청에 따라 명령한 것이다.

한편 被告는 이같은 豫備的 禁止命令에 不服 上訴하였다. 즉 當事者間의 契約으로서 錄音, 頒布契約에 의해 원고의 연주와 第3者의 연주를 組合하여 만들 權利를 被告가 取得하고 있으므로 被告가 스타디오에서 행한 연주의 테이프를 만드는 行爲는 契約에 의해 취득한 前述權利範圍內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4. 判決要旨

上訴에 대해 일리노이高法은 원고의 연주와 第3者의 연주를 組合하여 만든다는 契約上의 權利는 원고의 가곡에 소리를 넣어 행하는데까지 擴張하여 解釋되어서는 안되며 同一레코드盤에 원고의 가곡이외에 다른 音盤家의 가곡도 넣을 수가 있다고 해석된다 하여 被告의 주장을 排斥하였다.

5. 解 說

高法이 契約을 狹義로 해석한 理由는 著作物에 의한 財產

權(literary property)에 관한 契約에서는 明文으로 許諾되어 있거나 契約에 의해 默示의인 긴 하나 分明히 허락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면 物質的인 變更을 加할 權利가 許與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었다.

契約解釋上의 이 基準은 人格權의 認知에 가깝기는 하나 法院은 人格權에 의거하여 이 決定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美著作權法 第10條에 規定한 錄音物은 著作物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美國에는 人格權의 規定이 없다. 다만 國家에 따라서는 實演 레코드가 著作隣接權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되 저작권과는 달리 一般民法의 人格權뿐이며 獨立된 人格權의 規定은 없는 나라도 있다. 日本이 이 경우에 속한다.

